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2625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262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20가단5030340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2.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원고2. 보조참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 항소인 1. A

2. B

변론 종결 2021. 6. 18.

판결 선고 2021. 8.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20가단5030340 판결

주 문

1.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6. 24. 접수 제59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순번 2,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9. 6. 26. 접수 제77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A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5,306,642원 및 그중 4,524,070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다1).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서 피고 A가 L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016-03-09	14,250,000원	2021-03-09	연 10%
------------	-------------	------------	-------

나. 피고 A는 2019. 10. 1. 원리금연체로 인하여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20. 1. 16. 소외 은행에 4,606,52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82,450원을 회수하여서 미회수 잔액 4,524,070원과 확정손해금 22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782,550원도 피고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2019. 6. 24.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6. 24. 접수 제593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2,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2, 3, 4 부동산'이라고 하고, 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2019. 6. 26.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9. 6. 26. 접수 제771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마. 2019. 6. 24. 이후 현재까지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다.

바. 한편 피고 A는 2019.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20. 7. 28. 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사. 이에 원고는 2020. 8. 7.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송절차를 개인회생채무자 자격으로 피고 A가 수계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수계신청서를, 2020. 10. 5.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합계 5,306,642원(= 대위변제잔액 4,524,070원 + 확정손해금 22원 + 채권보전비용 782,55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와의 2016. 3. 9.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피고 A의 채권자인 소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2020. 1. 16.로서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는 경영상태의 악화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된다.

2) 공동담보의 부족 피고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경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4조 제1항,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개인회생채권자를 변제계획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됨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은바, 위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약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절차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중지 또는 금지되어야 하고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향후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 절차에서 채무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금전채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선고받고 부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실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피고 A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피고 A는 원고에게 5,306,642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4,524,07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20.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20. 2. 12.까지는 약정 이율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부인의 소 피고 B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에게,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6. 24. 접수 제59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순번 2, 3, 4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9. 6. 26. 접수 제77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있어 피고 A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하여 추가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인의 소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김정민

판사윤웅기

별지

1)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법원에 이르러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6. 26.자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부분을 추가한 다음,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부인의 소로 변경하면서 '각 증여계약을 부인하고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한 부분을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법령의 규정에 맞게 선행하여 판단한다.